



#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1200076  
신청인: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충청북도  
피신청인 :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KITA)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신청인2):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신청인들 대리인 :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동 정성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4 서초한샘빌딩 3층

피신청인: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영문 약칭 KITA)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분쟁 도메인이름은 "biokorea.org"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가비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0 유스페이스1 B동 401호타워 16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2. 9. 2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10. 9. 위 신청서를 일부 보정하였다.

2012. 10. 11.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2. 10. 11.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2. 10. 11.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2. 10. 12.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2012. 10. 12.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2. 11. 1. 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2. 11. 1.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답변서를 2012. 11. 5.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하였다.

2012. 11. 7. 센터는 서정일, 최성준, 도두형 조정위원회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2. 11. 27.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2012. 12. 13.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2012. 12. 18. 신청인은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12. 12. 28. 피신청인이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2003. 2. 18. 분쟁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영문약칭인 KITA 명의로 등록하였다.

2005년 무렵 국내에서 바이오산업이 각광을 받게 되자, 피신청인은 국내외의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제 바이오 포럼을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같은 해 말경 신청인1)에게 전시회는 피신청인이, 컨퍼런스는 신청인1)이 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국제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제의하여 양자 간에 BIO KOREA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 라 함)의 공동개최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신청인2)도 이에 참여하기로 하여 2006. 10. 31. 3자간에 이 사건 행사 공동개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후 위 협약은 2009. 12. 31. 개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협약을 ‘이 사건 협약’ 이라 함).



표장에 대하여 2006. 2. 21. 지정서비스업을 제35류 간행물광고업, 광고 또는 판매촉진시범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무역박람회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출원이 이루어졌고, 3자간 공동개최협약 체결 후인 2006. 12. 6. 위 표장에 대하여 등록번호 제 141183호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을 서비스표권자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이하 위 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서비스표’ 라 함).

이 사건 행사는 바이오산업 관련 국내외 회사들이 컨퍼런스, 전시회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하는 바이오산업 행사로서 2006. 9. 신청인1)과 피신청인이 공동개최자로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장에서 제1회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7년 행사부터는 신청인2)도 공동개최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된 후 2011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위 3자가 공동개최자로서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여 왔는데, 신청인들은 컨퍼런스와 비즈니스 포럼을, 피신청인은 전시회를 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여 왔다.

분쟁 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는 2006년의 이 사건 행사(제1회 행사)부터 2011년의 이 사건 행사까지 이 사건 행사를 광고하고 홍보하며 참가신청을 받는 웹사이트로 사용되었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9. 12. 31. 3자간 공동개최 협약을 개정하였고, 그 후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차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러한 회의들을 통하여 합의된 주요 내용은 회계를 단일화하고, 종전의 이 사건 행사를 통하여 얻은 잉여금을 사무국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었다.

위 합의에 따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사무국을 함께 설치하고자 누차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사무국의 설치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신청인들이 단독으로 2011. 6.경 바이오코리아 사무국을 설치하였고, 그 후 수차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행사 잉여금의 이체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12. 3.경 ① 이 사건 행사 잉여금 375,695,047원의 지급, ② 이 사건 서비스료 중 피신청인의 각 6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절차의 이행, ③ 이 사건 행사 개최 및 명칭 사용에 관한 권리가 신청인들에게 있음의 확인 등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6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중재신청을 제기하여 서로 다투던 중,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2012. 6. 15. 피신청인이 이 사건 행사의 공동개최 사업에 관한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위 조합 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하는 중재판정이 이루어졌다(중재법 제31조 제1항은, 중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고, 제3항은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이 보관 중인 바이오코리아 사업 관련 보관금 중 350,000,000원을 2012. 6. 30.까지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상기 (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지분권을 포기한다.
- (4)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신청과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반대신청을 모두 포기한다.
- (5) 중재비용은 본신청, 반대신청 모두 각자 부담으로 한다.

위 중재판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2. 8. 13.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서비스표권의 지분을 모두 신청인들에게 이전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하여는 신청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을 신청인들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1)은 이에 대비하여 2012. 3. 12. 'biokorea2012.org'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2012년의 이 사건 행사(2012. 9. 12.~ 14.)를 준비 및 진행하면서 위 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행사의 광고, 홍보, 참가신청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에 개최될 이 사건 행사에 대비하여 미리 2012. 3. 12. 'biokorea2013.org' 도메인이름도 등록하여 두었다.

이 사건 행사의 공동개최 사업에 관한 분쟁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화해에 따른 중재판정에 의하여 종결된 후에는 분쟁 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명칭은 ':::BIOKOREA2012:::한국무역협회(피신청인)' 라고 표시되고, 첫페이지에 피신청인의 영문 명칭 '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라는 표시와 '현재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표시만 나타날 뿐이며,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한 콘텐츠는 물론이고 그 밖의 다른 어떤 내용도 게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분쟁 도메인이름 'biokorea.org' 는 'biokorea' 와 'org' 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그 중 식별력이 없는 'org' 를 제

외한 나머지 ‘biokorea’는 신청인들이 서비스표권자인 이 사건 서비스표의 중요부분인 ‘BIO KOREA’와 동일하여 양자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행사(BIO KOREA 행사)의 개최에 관한 3자간의 사업관계, 즉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보유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분쟁 도메인이름의 사용이란 그 도메인이름으로 정상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하면서 그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에 ‘공사중’이라는 문구만을 표시해 놓음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 또는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타인이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분쟁 도메인이름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함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일반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신청인1)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분쟁 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이 사건 행사 공동개최 협약을 체결하여 조합관계가 형성된 2006. 10. 31.보다 3년 8개월이나 앞선 2003. 2. 18. 처음 등록한 것이고,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신청인이 그 등록을 유지하면서 그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계속 단독으로 부담하여 왔으며, 분쟁 도메인이름을 위 조합의 재산으로 출연한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 이유에서도 “피신청인이 위 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재산인 피신청인 명의로 예치된 보관금과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하여 정산하기로 화해하였다”고 명기된 바와 같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의 조합재산은 ‘잉여

금으로 예치된 보관금과 이 사건 서비스표' 만이 그 대상이고 분쟁 도메인이름은 위 조합의 재산이 아니다.

이처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조합관계를 맺기 훨씬 전에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고, 위 조합에서 탈퇴한 후에도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 및 보유 전시장 및 컨벤션 시설을 활용하여 바이오 관련 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새로이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부정확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확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 A. 이 사건 서비스표와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분쟁 도메인이름 중 '.org' 는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을 구별하는 표시 중 하나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식별력이 있는 중요부분은 'biokorea' 라고 할 것인데, 이것과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인 'BIO KOREA' 를 대비하여 보면, 분쟁 도메인이

름의 경우 ‘bio’ 와 ‘korea’ 가 그 사이에 빈 공간 없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 전부가 영문소문자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BIO KOREA’ 와 외관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고, 양자 모두 ‘바이오키리아’ 라고 호칭되며 ‘생명(또는 생물학, 인간의 삶) 한국’ 을 의미하므로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은 이 사건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 B.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행사(BIO KOREA 행사)의 공동개최 사업에 관한 조합관계를 형성한 후 2006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이견이 생겨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서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최종적으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행사의 공동개최 사업에 관한 조합에서 탈퇴하고 위 조합재산을 정산하는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으므로, 위 화해 후에는 이 사건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신청인들에게 귀속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아니한다.

이어서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이 사건 행사의 공동개최 사업에 관한 조합관계를 형성하기 수년 전에 단독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중에 이 사건 행사 개최 및 명칭 사용에 관한 모든 권리는 신청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판정주문에는 이 사건 행사의 공동개최 사업 관련 보관금(잉여금)의 지급과 이 사건 서비스표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이고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신청은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판정주문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행사의 명칭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

한 권리도 포기하였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재절차 진행 중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화해하는 과정에서 중재판정부가 신청취지 중 ‘이 사건 행사 개최 및 명칭 사용에 관한 모든 권리는 신청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는 부분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판정주문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판정주문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는 사용하지 않은 채 BIO KOREA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행사를 개최할 위험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정이유를 기재하지 않지만(중재법 제32조 제2항 단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들이 중재판정부에 요청하여 위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행사 공동개최 협약에서 탈퇴하고 이에 따라 조합재산인 피신청인 명의로 예치된 보관금 등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화해에 이르게 된 대강의 경위를 판정이유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판정이유에 ‘피신청인이 위 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재산인 피신청인 명의로 예치된 보관금과 서비스표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산하기로 화해하였다’ 고 기재한 사실,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1항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행사에 대해 행사 명칭을 포함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화해 내용을 기재한 중재판정의 판정주문에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행사 사업 관련 보관금의 지급과 이 사건 서비스표의 귀속에 관한 것 이외의 신청은 포기한다고 되어 있지만, 판정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행사 공동개최 사업에 관한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에다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1항의 내용까지 더하여 볼 때에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화해 내용에는, 신청인들이 BIO KOREA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행사를 계속함에 있어 피신청인은 이 사건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

음은 물론이고 피신청인이 BIO KOREA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유사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행사의 명칭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합에서 탈퇴한 이상, 신청인들이 BIO KOREA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행사를 계속하는 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행사와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BIO KOREA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피신청인도 이 사건 행사의 개최에 관한 권리가 신청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화해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는데, 그렇다면 화해 내용 중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신청취지에는 있었으나 판정주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나머지 모두를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중재신청 및 중재절차 과정에서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분쟁 도메인이름은 중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재판정에 신청인들이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라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재절차에서 신청인들이 분쟁 도메인이름이 확정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화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신청인들이 이 사건 분쟁해결신청을 한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중재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행사에 계속 사용하여 오던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화해가 있기 전인 2012. 3. 12. 신청인1)이 ‘biokorea2013.org’ 및 ‘biokorea2013.org’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인들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피신청인이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분쟁 도메인이름을 향후 전개할,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회, 컨퍼런스, 비즈니스 포럼 등의 행사 즉 이 사건 행사와 비슷한 행사에 사용할 생각으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실제로 그와 같이 사용하였다), 분쟁 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는 2006년의 이 사건 행사부터 2011년의 이 사건 행사까지 이 사건 행사를 광고하고 홍보하며 참가신청을 받는 웹사이트로 사용되어 온 점, 분쟁 도메인이름은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화해 내용에는, 신청인들이 BIO KOREA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행사를

계속하는 한 피신청인이 BIO KOREA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행사와 비슷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물론 피신청인이 BIO KOREA를 약간 변경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행사와 어느 정도 차별화된 행사를 개최하는 것까지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신청인은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관련 유수단체와 협력하여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바이오 관련 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새로이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때 그 광고, 홍보 등을 위해서 분쟁 도메인이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와 동일·유사한, 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BIO KOREA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위 명칭과 영문 철자가 동일한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행사의 광고 및 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위 중재판정의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결국 피신청인은 BIO KOREA를 약간 변경하거나 BIO KOREA에 식별력이 있는 단어를 부가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그 새로운 명칭과 같은 철자를 갖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중재판정이 있은 이후 현재까지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위 중재판정에 따라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해 온 위 조합에서 탈퇴하고 또한 문자부분이 분쟁 도메인이름과 철자가 같은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서비스표권의 지분을 모두 신청인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BIO KOREA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없게 된 이상, 비록 피신청인이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기 수년 전에 단독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일반적으로 등록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처음으로 등록할 당시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였어야 규정 제4조 (a)항 (iii)의 요건 중 ‘부

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것' (~ has been registered ~ in bad faith)을 충족한다. 그러나 처음으로 등록할 당시 등록인에게 부정적인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등록인이 부정적인 목적에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이와 같은 상황을 처음으로 등록할 당시 부정적인 목적으로 등록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2003. 2. 18. 최초로 등록할 당시에 신청인들이 이 사건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부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이 사건 행사의 공동개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조합관계를 형성한 다음 실제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6년 동안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행사를 광고, 홍보하며 참가 신청까지 받아오다가, 2012년에 이르러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심화되어 결국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신청인은 위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이 사건 행사 관련 보관금(잉여금)의 지급과 이 사건 행사의 명칭이 포함된 이 사건 서비스포의 귀속에 관하여 화해를 하는 중재판정이 있었으며, 잔여 조합원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행사를 계속 진행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분쟁 도메인이름은 위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되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데,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 자체가 위 조합의 재산이 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 조합에서(이 사건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 앞으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행사와 동일·유사한, 바이오산업 관련 새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행사의 명칭으로 BIO KOREA를 사용하는 것은 B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중재판정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신청인1)이 서비스표권자인 이 사건 서비스포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결국 새로운 행사의 명칭을 달리 하여야 하며, 신청인들이 이 사건 행사를 계속하는 한, 만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행사의 명칭과 철자가 동일한(자신의 행사의 명칭과는 철자가 다른) 분쟁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하면서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신의 새로운 행사를 광고, 홍보하며 참가신청을 받는데 사용한다면, 이는 우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할 여지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7년 이상 계속되어 온 이 사건 행사(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행사를 광고, 홍보하고 참가신청을 받았었다)의 명성을 이용하여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새로운 행사를 신청인들이 개최하는 이 사건 행사와 혼동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피신청인이 바이오산업 관련 새로운 행사를 개최하지도 않으면서 분쟁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한다면, 이는 BIO KOREA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행사를 계속 개최하는 신청인들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처음 등록할 당시에는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에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의 등록유지를 처음 등록할 당시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된다. 결국 분쟁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비록 현재는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정상적인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지는 않고 분쟁 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개편 중’ 이라는 표시만 나타나고 있지만, 피신청인 스스로 피신청인이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관련 유수단체와 협력하여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바이오 관련 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새로이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때 그 광고, 홍보 등을 위해서 분쟁 도메인이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위 중재판정에 어

긋나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행사의 명성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이 사건 행사와 혼동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신청인들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도 앞에서 본바와 같다.

이를 종합하면 분쟁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규정 제4조 (a)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인 <biokorea.org>의 등록을 신청인들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바, 신청인들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들 중 신청인1)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서정일 주조정인	
도두형 부조정인		최성준 부조정인

결정일: 2013년 2월 13일